

2004년 형법에서 탈북행위는 두가지 점에서 이전과 다르다. 첫째, 구형법이 국경을 “넘는” 자라고 규정하는데 반해, 신형법 제233조(비법국경출입죄)는 국경을 “넘나드는” 자라고 하고 있다. 이는 국경을 넘어간 자가 또다시 들어오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비법국경출입죄의 법정형이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1999년)으로부터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2004년)으로 대폭 완화된 것이다. 즉 2년의 로동단련형은 1년의 로동교화형에 해당하니까 법정형이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 셈이다. 국경관리부문 일꾼이 비법적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자를 도와준 국경출입협조죄(제234조)의 경우에도 “2년이상 7년 이하의 로동교화형”(1999년)인데 반해, 지금은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2004년)으로 대폭 완화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실제로 탈북자의 수가 빈발함에 따라 탈북자의 엄벌방침으로부터 온건처벌론으로 선회한 것으로, 매우 주목할 만하다.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남·북한왕래]에서는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고자 할 때에는…통일원장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7조)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비법적인 단순월경행위에 대한 제재라 할 수 있다. 그에 반해 국가보안법 제6조[잠입·탈출] 제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북한의 공화국전복목적탈출보다 처벌범위가, 조문의 문구상으로는, 더 넓은 인상이다. 그리고 동 제2항에는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잠입하거나 탈출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북한의 “공화국전복”이란 문구보다 그 제재대상이 되는 범위가 넓다고 생각된다.

요컨대 북한도 남한도 허가없이, 비법적으로, 왕래하거나 잠입·탈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식량난, 대북접촉의 활성화 등의 요인은 왕래/잠입/탈출을 점점 경미하게 처벌하는 방향으로의 약간의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남한은 실제 처벌은 경미할 지라도, 법개정이 없기에 조문상으로는 북한보다 가혹한 법정형을 유지하고 있다.

앞으로 남북관계가 활발해질수록, 남한과 북한에 대해 범죄적 활동을 하기 위한 경우가 아니고는 처벌범위가 현저히 축소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2) 북한의 반국가범죄와 국가보안법의 개폐 문제

남북간의 법률논쟁에서 북한은 남한의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고 주장하고, 남

한은 그에 맞서 북한의 노동당규약 및 형법상의 상응규정이 동시에 개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필자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은 국가보안법 개폐를 주장할 자격이 없다. 북한이 자신의 체제이익 수호와 친북세력 조성을 위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는 명분을 남측에 들이대지는 못할 것이다. 그들이 들이댈 명분은 인권탄압과 남북의 평화와 화해에 저해된다는 점일 것이다.

먼저 인권탄압을 주장한다면 북한에도 그 기준이 동시 적용되어야 한다는 반대 주장을 수용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그리고 인권면에서 북한이 남한보다 낫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어야 할 것이다. 가령 미국이 중국의 인권탄압을 비판하고 중국이 미국의 인종문제를 들어 역공했다면, 적어도 미국은 대체로 인권면에서 중국보다 나은 것이고 중국은 인종문제면에서 미국보다 나아야만 그 주장이 합당한 설득력을 가질 것이다.

민족마다 문화권마다 다른 인권기준을 가진다고 주장할 수도 있으나, 남한도 북한도 유엔인권규약에 가입한 바 있으므로 적어도 유엔인권규약을 공통의 기준으로 적용하는 데 별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인권침해 문제를 들어 내정간섭이라는 비판도 할 수 있으나, 적어도 90년대 이후 그러한 비판은 '인권은 주권보다 앞선다'는 명제에 가려 주권을 방패막이로 내세워 인권침해 주장을 봉쇄할 수는 없다. 그러면 적어도 북한은 남한과는 달리 국가보안법과 유사한 탄압입법이 없다는 전제를 깔고 있어야 한다. 이제껏 살펴보았듯이, 그렇지 않다.

인권침해 측면에서 북한은 국가보안법의 반인권성을 비판할 수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북한의 인권 수준은 남한과 비교할 수 없이 열악하다. 인권상황에 대한 한 척도는 인권정보의 공개, 인권침해현장에의 접근가능성 등이다. 그런데 과연 북한에서 인권관련 정보가 공개되고 인권침해가 주장되는 현장에의 자유로운 방문이 허용되고 있는가. 그런 면에서 매우 부정적인 답변을 내릴 수밖에 없다. 때문에 북한이 남한의 인권침해를 시정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맞는 경우에도 그 설득력은 약하다.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처벌이 경미해지고 처벌량이 약화되는 남한과 수령비판도 할 수 없는 북한의 상태를 비교해보면 자명하다. 따라서 북한의 국가보안법 폐지주장이 인권적 관점에서 비롯된다면 오히려 북한 자신의 '대들보만한 흠'을 치유하려는 자각적 노력을 아울러 보여주어야 한다.

남북관계에서 형사법 개폐의 문제를 다루는 실마리는 양쪽의 합의에 의해 마련된 바 있다. 1992년 남북한 당국간에 합의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서는 '내부문제 불간섭'을 선언했다. 그 합의서에 따르면 제1장 '남북화해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제1조는 "상대방의 정치·경제·사회·문화·체제(제도)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선언하고 있으며, 제

4조는 이 합의서에 저촉되는 “법률적, 제도적 장치의 개정 또는 폐기 문제를 법률 실무협의회에서 협의·해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상대방의 법질서와 당국의 시책에 대하여 간섭하지 아니하고”(제5조), “상대방의 체제와 법질서에 대한 파괴·전복을 목적으로 하는 테러단체나 조직을 결성 또는 지원·비호하지 아니할 것”(제17조)을 명시하고 있다.

이 부속합의서에 따르면 남한의 국가보안법 및 그 집행은 ‘상대방의 법질서와 당국의 시책’에 관한 것이므로 남한도, 북한도 상대방의 법을 간섭할 수 없다. 다만 북한이 국가보안법 개폐에 대해 진지한 의지를 갖고 있으면 ‘법률적 장치의 개정 또는 폐기문제를 협의·해결’할 법률실무협의회를 구성하는 데 동참해야 한다. 남한 역시 교류·협력의 제고를 위해 법률실무협의회 구성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국가보안법 및 그에 대응하는 북한의 법률·법질서·법적 시책들은 정상회담 등에서 불쑥 불쑥 제기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실무협의회에서 차근차근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다. 이러한 방향이 남북합의서에 부합할 뿐 아니라 진정한 화해와 통일을 위한 합리적 방안이라고 본다. 국가보안법 선(先) 폐지론에 대하여는 북한에 법률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이 협의회에서는 남한과 북한의 냉전-’분단법령 정비’가 동시에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의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이 온당하지 않다면 남한은 국가보안법을 개폐하지 않아도 좋은가. 대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북한의 주장 때문에 개폐해야 한다는 주장이 부당한 것처럼, 북한이 주장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 개폐할 수 없다는 입장 역시 옳지 않다. 그것은 대한민국 헌법 및 유엔인권규약의 정신에 비추어 그렇다.

대한민국은 북한과는 체제이념과 국가상을 달리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기본으로 하며 평화적 통일의 방향을 헌법에서 선언하고 있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파시즘적 체제에 어울리며, 평화통일이 아니라 평화통일에 적대적인 내용을 지니고 있다. 그 조문에 있어 인권침해적 독소조항이 적지 않았으며, 인권침해적 법해석이 적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 독소조항만 제거하면 되지 않겠는가 하고 반문하겠지만, 그 독소조항을 제거하고 나면 국가보안법 자체가 껍데기만 남는 꼴이 된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면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무슨 법으로 지킬 수 있겠는가 하고 반문한다면, 현행 형법상의 내란죄·외환죄를 비롯한 각종 범죄조항들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답할 수 있다. 법해석에서 인권침해적 해석을 지양하고 엄격 축소해석을 하면 되지 않겠는가 하지만, 이는 형법상의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원칙에 어긋난다. 형법상 명확한 해석을 허용할 정도의 법조문을 만들지 않고서는 이미 위헌의 가능성 앞에 놓이는 것이다.

현재의 국가보안법은 사소한 손질로 개선되기 어렵다. 따라서 북한의 주장과 상

관없이 대한민국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광범위하고 애매하게 제한하는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국가보안법 존치론자들은 현행 헌법 제3조의 영토규정을 들어, 북한이 반국가단체 혹은 정부참칭단체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즉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하면, 대한민국의 실효적 지배가 미치지 않는 지역은 “대한민국에 대적하고 있는 집단의 강점하에 있는 미수복 영토”가 되는 셈이다. 북한은 ‘외국’이나 ‘적국’이 아닌 교전단체의 수준에 머물게 된다. 이렇게 될 때 북한과의 대등한 대화, 상호 존재의 인정에 기반한 어떤 정책을 구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70년대 들어 이런 원칙은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파기된다. 72년 7·4 공동성명은 남북간 대등한 지위를 인정한 것으로 되어 북한의 반국가 ‘단체성’은 실체를 상실한다. 87년 개정헌법에서 신설된 제4조에 ‘평화적 통일정책’을 지향한다는 조항이 들어선 것은 북한을 평화통일의 ‘상대방’으로 받아들인다는 헌법적 선언이다. 상위법인 헌법의 평화통일조항은 하위법인 국가보안법의 폐기 내지 적용범위의 제한을 강제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의 강제성은 92년 ‘남북합의서’를 통해 더욱 현실화되었다. 남북합의서 전문에서는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제1조)고 하여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평화적 관계형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국경을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규정한다(제11조). 그리고 기본합의서 서명란에는 남북한의 정식 국호와 서명자의 공식 직함을 명시함으로써 상대방 체제의 실질적 국가성을 서로 확인한 것이다. 그에 의거할 때 북한의 정부는 반국가단체가 아니라 남한과 대등한 상태의 인정·존중되어야 할 ‘체제’임을 인정한 것이다.

이러한 통일지향적 조문·대북정책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 국가보안법의 반국가단체 규정이다. ‘반국가단체’의 개념은 국가보안법의 핵심이다. 이 법 제2조에서 정의되는 반국가단체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을 가리키는데, 이 법에 따르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정부를 참칭’한다는 단 한가지 이유 때문에 자동적으로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가 된다. 따라서 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와의 회합·통신, 금품수수 등의 행위는 모두 고스란히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를 구성한다. 북한 대표가 남한을 방문할 때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제10조의 불고지죄, 수사기관의 공무원들이 이들을 체포·구속하지 않으면 제11조의 특수직무유기죄가 성립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행 국가보안법 체제하에서 남북간의 체제인정, 접촉, 회합, 금품수수 등

은 모두 범죄일 수밖에 없게 된다.

법현실의 변천 및 범규범의 변경은 국가보안법의 축소적 변형 내지 폐지 쪽으로의 압력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 없다. 적어도 '정부의 참칭' 용어는 현상태에서 유지될 수 없으며, '국가의 변란'도 매우 애매하고 다의적인 개념이다. 따라서 현행 국가보안법을 유지하는 입장에서도 우선 국가보안법의 핵심인 반국가단체의 개념부터 헌법원칙 및 남북관계의 변화에 맞추어 매우 축소된 방향으로 재규정되어야 한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북한을 자동적으로 반국가단체로 간주하는 규정 자체가 유지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다음 일반법인 형법과 국가보안법의 관계를 살펴보자. 국가보안법은 48년 여순반란, 제주폭동 등의 국가적 위기에 직면하여 일시적으로 법치주의를 잠시 양보하고 비상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견지에서 입법화되었다. 즉 입법화될 당시 국가보안법은 '임시조치'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었음을 당시의 입법자도 충분히 인정한 바와 같다. 거기다 53년 일반법인 형법이 제정될 때 그 초안자(김병로 대법원장)는 국가보안법을 형법 속에 흡수할 것을 전제로 충분한 조문화 작업이 이루어졌음을 밝힌 바 있다.

현행 형법은 6·25 전시하에서 제정된 까닭에 국가의 존립 및 활동을 보호하는데 매우 역점을 두었으며, 그 때문에 지나치게 국가주의적이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는 실정이지만 지금껏 개정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형법만으로 국가의 존립·안전의 보장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형법에는 국가보안법 제7조(고무·찬양), 10조(불고지), 19조(구속기간의 연장) 등과 같은 조문은 없다. 이 조문들은 모두 인권침해적 법률로 집중 비판받는 조항으로서,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해서가 아니라 독재정권 강화 요청에 부응하여 날치기 및 비상입법의 방법으로 편입된 것이다. 그러한 독재강화·'인권유린을 위한 특별규정을 제외하고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장치로는 현행 형법으로 충분하다.

물론 형법 조항 중 일부를 손질해야 할 필요는 있다. 다만 형법에 의할 때 북한(인)을 원천적인 반국가단체(개인)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적대적 행위, 그 중에서도 형법에 특정된 범죄적 행위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함으로써(이는 남한지역 거주자도 마찬가지다) 대한민국과 북한의 관계를 보다 평화지향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에서 규정되는 행위는 형법 이외의 다른 법률과 중복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90년 제정) 및 출입국관리법, 외국환거래법(99년 제정)은 각각 국가보안법 제6조(잠입·탈출), 제5조(자진지원·금품수수)와 일정부분 중복된다. 그러나 남북교류법·출입국관리법·외국환거래법 등은 규제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분명하고 절차적 통제에 주안점을 둔 것이므로 법적용상의 남용 위험

성은 별로 없으며, 법정형도 적정하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의 경우 법적용상 애매하므로 남용 위험성이 있으며, 법정형도 지나치게 가중되어 있다. 사실상 그러한 높은 법정형이 선고되거나 선고형조차도 그대로 집행되는 경우가 적다. 만일 출입국관리, 외환거래의 이유가 형법상의 행위(간첩, 편의제공)에 저촉된다면 출입국관리법 등에 더하여 형법상의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더 이상의 특별한 조항으로 자유를 엄격히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국가보안법이 형법 기타 특별법과 겹치는 부분이 상당하다면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두어도 별 문제가 없지 않은가 하는 반론도 제기될 수 있을 법하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경우 실제로 커다란 차이가 있다.

첫째, 다른 법에는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 및 제10조(불고지죄)에 해당하는 조항이 없다. 즉 국가보안법이 폐지될 경우 그동안 가장 남용되었던 조항, 시민적 자유를 직접 침해하는 조항이 곧바로 삭제되는 효과를 갖는 것이다.

둘째, 국가보안법 제3장에 있는 특별형사소송규정이 삭제되는 효과가 있다. 참고인의 구인·유치(제18조), 구속기간의 연장(제19조), 공소보류의 특례(제20조) 등이 그것인데, 이러한 규정들은 매우 인권침해적이라고 비판받아온 것이다.

셋째, 안기부(현 국가정보원) 등 공안기관이 시민의 일상을 감시·감독할 수 없다. 94년 국가안전기획부법의 개정을 통해 제7조 위반죄에 대해서는 안기부의 수사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96년 날치기 개정을 통해 다시 안기부는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 전체에 대해 수사할 수 있는 것으로 원상회복되었다. 국가보안법이 폐지되거나 적어도 제7조, 10조라도 폐지된다면 공안당국에 의한 인권침해 가능성은 훨씬 줄어들 것이다.

국가보안법의 필요성에 대한 의구심은 형벌적 측면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정말로 국가보안법 위반자가 지금도 그토록 위험하고 반국가적이라면 그에 대한 형벌도 지극히 엄중해야 할 것이다. 과거엔 그랬다. 그러나 80년대 초반 이래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사형이 집행된 예는 없었고, 사형 선고도 극히 드물어졌다. 더욱이 최근에는 실형보다 집행유예로 종결되는 사안이 훨씬 많으며 그 비율도 매년 확대되어가고 있다. 검사의 기소율도 크게 하락하고 있다. 정말로 이들의 존재가 위험천만이라면 이러한 경미한 형벌, 집행유예, 가석방, 사면 등이 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이들의 석방으로 국가의 존립·안전이 위태로웠던가.

왜 처벌이 갈수록 경미해지고 있는가. 국가보안법의 인권침해에 대한 의구심은 높아진 반면 범행의 실질적 위험성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냉전국면의 퇴조, 군부정권의 퇴조, 그리고 북한에 대한 정보의 확산, 국민의식의 성숙도 등이 결합하여 남북한간 대량의 정보, 인원, 물자가 오고가는 상황, 체제경쟁의 사실상 종식 등의 사정으로 인해 국가보안법 위반행위의 처벌가치(penal value)가 격감된

점이 경미한 처벌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제 국가보안법 위반행위를 엄벌에 처하기 보다는 오히려 그 표현들이 공론의 장에 노출되고 평가와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르게 하는 것, 즉 '사상의 자유시장'에 맡기는 것이 더욱 바람직함을 보여준다 할 것이다.

우리는 북한과 대화·협력해야 한다. 하지만 북한이 남한과 체제의 경쟁자임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체제의 우위는 군사력으로 결판난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군사적으로 볼 때 북한이 우리보다 압도적으로 열세인 것 같지는 않다. 체제우위를 결정하는 다른 중요한 요소는 경제력일 것이다. 이 측면에서 북한은 남한과 비교대상이 될 수조차 없다. 그러나 체제우위가 단지 경제력 우위에서 확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진정한 우위는 군사력 및 경제력에 더하여 민주화와 인권 수준의 우위에서 추구될 것이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민주화와 인권의 향상을 북한에 과시하는 도덕적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군사력과 경제력은 상대방을 위압하는 것이지만, 도덕적 우위는 상대방이 따라야 할 하나의 모델의 성격을 갖는다. 서독이 동독을 끌어들이는 것도 서독의 민주주의와 다원주의가 동독을 포용할 만큼 강했기 때문이다. 남북의 화해와 통일이 더 높은 민주화와 인권국가로의 길이어야 한다면 국가보안법 폐지는 현실적으로, 상징적으로 큰 의의를 가질 것이다. 군사력·경제력·시민사회의 성장·인권의 수준 등 모든 면에서 북한을 압도하는 남한이 유독 국가보안법 문제만은 낙후된 북한의 기준을 고집하거나 그에 연계하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임을 밝혀두고자 한다.

최종편집 : 2004. 12. 08 (수) 14:24

북한 형법 전문

다음은 북한이 5차 개정한 형법 전문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 주체93(2004)년 4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432호 로 수정보충

제 1장 형법의 기본

제1조 (형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은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 및 형벌제도를 바로 세워 국가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보위하고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범죄자의 처리원칙) 국가는 범죄자의 처리에서 로동계급적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사회적 교양을위주로 하면서 이에 법적 제재를 배합하도록 한다.

제3조 (범죄의 미연방지원칙) 국가는 모든 공민들이 법을 존엄있게 대하고 엄격히 지키며 범죄와의 투쟁에 적극 나서게 하여 범죄를 미리 막도록 한다.

제4조 (조국과 민족반역행위를 누우친 자의 처리원칙) 국가는 조국과 민족을 반역한 행위를 한 자라 하더라도 조국통일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나서는 경우에는 과거를 묻지 않으며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도록 한다.

제5조 (자수자의 처리원칙) 국가는 범죄를 저지른 자라 하더라도 자기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자수한자에 대하여서는 관대히 용서하도록 한다.

제6조 (형법에 규정된 행위에 대해서만 형사책임을 지우는 원칙) 국가는 형법에서 범죄로 규정한 행위에 대하여서만 형사책임을 지우도록 한다.

제7조 (형벌적용의 원칙) 국가는 범죄의 엄중성 정도와 범죄자의 개준성(개전성) 정도를 고려하여 그에해당한 형벌을 적용하도록 한다.

제8조 (형법의 대인적 및 공간적 효력원칙) 이 법은 범죄를 저지른 공화국 공민에게 적용한다. 공화국 령역 밖에서 범죄를저지른 공화국 공민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

공화국 령역 안에서 범죄를 저지른 다른 나라 사람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그러나 외교특권을 가진 다른나라 사람에 대한 형사책임은 그때마다 외교적 절차에따라 해결한다.

다른 나라에서 공화국을 반대하였거나 공화국 공민을 침해한 다른 나라 사람에게도이 법을 적용한다.

제2장 일반규정 제1절 범죄 제10조 (범죄의 개념) 범죄는 국가주권과 사회주의 제도와 법질서를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형벌을줄 정도의 위험한 행위이다.

제11조 (형사책임 나이) 범죄를 저지를 당시 14살 이상 되는 자에 대하여서만 형사책임을 지운다.

제12조 (형사책임 무능력 상태에서 사회적 위험 행위를 한 자의 처리) 만성정신병, 일시적인 정신이상 때문에 자기의 행위를 가리지 못하였거나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회적으로 위험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서는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으며 의료처분을 적용할 수 있다.

술에 취하여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서는 양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13조 (정신병 상태에 있는 범죄자의 처리) 정상적인 정신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자가 수사, 예심, 재판 당시 정신병 상태에 있을 경우에는 의료처분을 적용하며 회복되었을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지운다.

제14조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는 일반조건) 이 법에서 범죄로 규정한 행위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사회적 위험성이 없거나작아 가별성이 없을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제15조 (정당방위) 이 법에서 범죄로 규정한 행위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국가 및 사회적 이익이나다른 사람 또는 자기 자신의 적법적 이익을 침해하는 위급한 범죄를 막기 위한 것으로서 그것이 방위의 정도를 지나치게 넘지 않았을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제16조 (긴급피난) 이 법에서 범죄로 규정한 행위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위급한 사태를 피하는 데그 길밖에 없었으며 그렇게 한 결과 입은 손실이 보호한 리익보다 적을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제17조 (피해자의 사전요구에 기초한 가해자의 형사책임) 피해자의 요구에 기초하여 그의 인신 또는 재산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서는 사회적 위험성이 있을 경우에만 형사책임을 지운다.

제18조 (가족, 친척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 가족, 친척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서는 용서하여 줄 데 대한 피해자 또는 피해자측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고의적 중살인죄, 강도죄, 강간죄에 대하여서는 앞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19조 (범죄의 준비와 미수에 대한 형사책임) 범죄의 준비와 미수에 대한 형사책임은 범죄의 위험성 정도, 범죄의 실행정도, 기수에 이르지 못한 원인을 참작하여 정한다.

범죄의 준비와 미수에 대하여서는 기수와 같은 조항을 적용한다.

범죄의 준비는 미수, 범죄의 미수는 기수보다 가볍게 처벌한다.

제20조 (자발적으로 중지한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 범죄를 준비하거나 저지르다 도중에 스스로 완전히 중지한 경우에는 그만둔 범죄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그러나 실지로 한 행위가 다른 무거운 범죄의 표징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한 형사책임을 지울 수 있다.

제21조 (공범사건에서 주모자와 추종자에 대한 형사책임) 범죄조직체의 주모자와 추종자에 대하여서는 그 조직체가 목적인 범죄에 해당되는 조항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우며 주모자는 무겁게 처벌한다.

제22조 (공범사건에서 추진자, 방조자에 대한 형사책임) 범죄조직체가 아닌 공범사건에서 추진자, 방조자에 대하여서는 실행자에게 적용하는 조항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운다.

추진자는 실행자와 같게 또는 무겁게, 방조자는 실행자와 같게 또는 가볍게 처벌한다.

제23조 (특수적 표징을 요구하는 범죄를 저지른 공범자에 대한 형사책임) 특수적 표징을 요구하는 범죄의 실행자가 해당한 표징을 갖추지 못한 자와 공모하여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그러한 표징을 갖추지 못한 범죄실행자, 추진자, 방조자도 공동범죄실행자, 추진자, 방조자로 형사책임을 지운다.

제24조 (은닉죄에 대한 형사책임) 범죄를 저지른 당시에 관여하지 않고 범죄를 저지른 다음 범죄자 또는 범죄의 흔적을 감추어준 자에 대하여서는 이 법에 규정된 경우에만 형사책임을 지

운다.

제25조 (불신고죄에 대한 형사책임) 범죄를 준비하고 있거나 저지른 것을 알면서 그것을 해당 기관에 알리지 않은자에 대하여서는 이 법에 규정된 경우에만 형사책임을 지운다.

제26조 (방임죄에 대한 형사책임) 해로운 긴급한 사태를 능히 막거나 막을 대책을 세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버려두어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자에 대하여서는 이 법에 규정된 경우에만 형사책임을 지운다.

제27조 (형벌의 종류) 형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무기로동교화형
 3. 유기로동교화형
 4. 로동단련형
 5. 선거권박탈형
 6. 재산몰수형
 7. 자격박탈형
 8. 자격정지형
- 제28조 (기본형벌과 부가형벌) 사형,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은 기본형벌이다.

선거권박탈형, 재산몰수형, 자격박탈형, 자격정지형은 부가형벌이다.

제29조 (사형) 사형은 범죄자의 육체적 생명을 박탈하는 방법으로 집행한다.

범죄를 저지를 당시 18살에 이르지 못한 자에 대하여서는 사형을 줄 수 없으며 임신녀성에 대하여서는 사형을 집행할 수 없다.

제30조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은 범죄자를 교화소에 넣어 로동을 시키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 집행기간에는 국민의 기본권리가 정지된다.

유기로동교화형 기간은 1년부터 15년까지로 한다. 범죄를 병합하거나 합산할 경우에도 유기로동교화형 기간은 15년을 넘을 수 없다.

범죄자가 구속되어 있는 기간 1일을 유기로동교화형 기간 1일로 계산한다.

제31조 (로동단련형) 로동단련형은 범죄자를 일정한 장소에 보내어 로동을 시키는 방법으로 집행한다.

로동단련형 집행기간에는 국민의 기본권리가 보장된다.

로동단련형 기간은 6개월부터 2년까지로 한다. 범죄를 병합하거나 합산할 경우에도 로동단련형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범죄자가 구속되어 있는 기간 1일을 로동단련형 기간 2일로 계산한다.

제32조 (선거권박탈형) 선거권박탈형은 반국가 범죄와 반민족 범죄를 저지른 자로부터 일정한 기간 선거할 권리를 빼앗는 방법으로 집행한다.

재판소는 반국가 범죄와 반민족 범죄사건을 심리할 경우 선거권박탈 문제를 함께 심리하여야 한다.

선거권박탈형 기간은 5년을 넘길 수 없으며 유기로동교화형 집행이 끝난 날부터 계산한다.

제33조 (재산물수형) 재산물수형은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재산을 국가에 넘기는 방법으로 집행한다.

이 경우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가족이 최저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식량과 일용품수품, 돈을 남겨놓는다.

제34조 (재산물수형 취소 및 사건기각시 재산보상) 재산물수형이 취소되었거나 사건이 기각되었을 경우에는 몰수하였던 재산을 돌려준다.

현물로 돌려줄 수 없을 경우에는 그 물건에 해당한 값을 돌려준다.

제35조 (재산물수당한 자의 빚처리) 재산을 몰수당한 자가 재산담보처분이 있기 전에 진 빚에 대하여서는 몰수한 재산으로 범이 정한 순위에 따라 물어준다. 그러나 재산담보 처분이 있는 다음에 진빚에 대하여서는 몰수한 재산으로 물어주지 않는다.

제36조 (자격박탈형) 자격박탈형은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가지고 있던 일정한 자격을 완전히 빼앗는 방법으로 집행한다.

재판소는 일정한 자격을 범죄를 저지르는 데 리용한 사건을 심리할 경우 자격박탈 문제를 함께 심리하여야 한다.

제37조 (자격정지형) 자격정지형은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가지고 있던 일정한 자격을 일시적으로 빼앗는 방법으로 집행한다.

재판소는 일정한 자격을 범죄를 저지르는 데 리용한 사건을 심리할 경우 자격정지문제를 함께 심리하여야 한다.

자격정지형 기간은 3년을 넘길 수 없으며 유기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계산한다.

제38조 (형벌의 량정) 형벌량정은 범죄의 성격, 목적과 동기, 수단과 방법, 실행정도, 공모관계, 범죄자의 개준성 정도 같은 것을 참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항에 규정된 형벌의 한도를 기준으로 한다.

제39조 (형벌량정에서 무겁게 보는 조건) 형벌량정에서 무겁게 보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의 주동분자인 경우 2. 여러번 또는 공모하여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3. 잔인한 수단과 방법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4. 자기의 보호 밑에 있거나 직무상 복종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5. 전시 또는 재해상태를 리용하여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제40조 (형벌량정에서 가볍게 보는 조건) 형벌량정에서 가볍게 보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의 피동분자인 경우 2. 처음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3. 강한 정신적 자극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4. 미성인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5. 정당방위, 긴급피난의 정도를 넘었을 경우 6. 자백을 하였을 경우 7. 많은 공로를 세운 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8. 략취하였거나 파손한 재산을 스스로 보상하였거나 원상복구하였을 경우 9. 피해자에게 잘못이 있었을 경우 제41조 (형벌의 가중 경감범위) 형벌량정에서 무겁게 또는 가볍게 보는 조건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형벌의 절반까지의 범위 안에서 무겁게 또는 가볍게 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조항에 규정된 형벌의 최고 또는 최저한도보다 높게 또는 낮게 줄 수 없다.

제42조 (법정형의 최저한도보다 형벌을 낮게 정하는 경우) 재판소는 해당 조항에 규정되어 있는 형벌의 최저한도보다 더 낮게 형벌을 주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해당 조항에 규정되어 있는 형벌보다 낮게 줄 수 있다.

제43조 (범죄의 병합조건) 한 범죄자가 저지른 여러 형태의 범죄가 각각 독립적으로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을 경우에는 병합할 수 있다. 그러나 여러 형태의 범죄들이 결합되어 하나의 범죄로 되었거나 어느 한 형태의 범죄가 다른 형태의 범죄를 저지르는 데 필수적 전제로 되었을 경우에는 병합할 수 없다.

제44조 (범죄병합시의 형벌량정) 한 범죄자가 저지른 여러 형태의 범죄를 함께 재판할 경우에는 매 범죄별로 형벌을 량정한 다음 제일 높게 량정한 조항의 형벌에 나머지 조항의 형벌을 절반 정도합한다. 이 경우 병합한 범죄에 해당하는 부가형벌은 기본형벌과 함께 적용한다.

판결의 선고는 이 조로 한다.

제45조 (서로 다른 종류의 형벌기간 계산) 서로 다른 종류의 형벌기간을 하나의 형벌기간으로 랑정할 경우에는 제재의 도수가 높은 종류의 형벌로 하며 로동단련형 기간 2일을 유기로동교화형 기간 1일로계산한다.

제46조 (형벌집행이 끝나기 전에 저지른 범죄와 숨긴 범죄에 대한 형벌량정)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판결이 확정된 다음 형벌의 집행이 끝나기 전에 새로운범죄를 저질렀거나 숨긴 범죄에 대하여서는 형벌을 랑정하여 남은 형기에 합한다.

제47조 (이상, 이하에 대한 해석) 이 법에서 형벌기간을 지적한 이상, 이하는 해당 수를 포함한다.

형벌기간은 범죄의 위험성 정도에 따라 년뿐 아니라 개월까지 정할 수 있다.

제48조 (형벌집행기간 계산) 형벌집행기간의 계산은 범죄자가 구속된 날부터 형벌기간이 마감되는 날까지로한다.

구속되어 있는 기간의 형벌집행기일 계산은 이 법 제30조와 제31조에 따른다.

제49조 (사회적 교양처분) 미성년이 범죄를 저질렀거나 성인이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의 개준성 정도, 범죄의 위험성 정도에 비추어 사회적 교양의 방법으로 고칠 수 있을 경우에는 사회적 교양처분을 할 수 있다.

제50조 (사회적 교양 처분을 받은 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의 형벌량정) 사회적 교양 처분을 받은 자가 이미 저지른 범죄의 형사소추 시효기간에 새로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사회적 교양처분을 받았던 범죄에 대하여 형벌을 랑정하고 그 전부 또는 새로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랑정한 형벌을 합한다.

제51조 (집행유예 적용조건과 기간) 5년까지의 로동교화형을 받은 자의 개준성 정도, 범죄의 위험성 정도에 비추어 그를 교화소에 보내어 로동교화형을 집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과같이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릴수 있다.

1. 3년까지 로동교화형의 유예기간은 3년부터 5년까지 2. 3년 이상 5년까지 로동교화형의 유예기간은 5년부터 7년까지 제52조 (집행유예의 법률적효과)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에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에게 내렸던 판결의 집행을 끝난 것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새로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유예한 형벌의전부 또는 일부를 새로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랑정한 형벌에 합한다. 합한 형벌의유기로동교화형 기간은 15년을 넘을 수 없다.

제53조 (특사,대사)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형벌면제는 특사 또는 대사로 한다.

특사, 대사의 실시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한다.

제54조 (만기 전 석방)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을 받은 자가 범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개준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교양개조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유기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은 받은 형기의 절반이 지난 다음 형벌집행을 면제할수 있으며 무기로동교화형은 15년이 지난 다음 형벌집행을 면제하거나 유기로동교화형으로 변경하여 줄 수 있다. 형벌집행의 면제 또는 변경과 관련한 제기는 형벌집행기관이 하며 이 제기는 해당 재판소가 심리, 판정한다.

제55조 (형벌집행이 끝난 자의 법적지위) 특사, 대사를 받은 자 또는 형벌집행이 끝난 자에 대하여서는 특사, 대사를 받은 날 또는 형벌집행이 끝난 날부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던 자와 같이 인정하며 법적으로 차별하지 않는다.

제56조 (형사소추 시효기간) 범죄를 저지른 때부터 다음의 기간이 지나면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1. 2년까지의 로동단련형을 줄 수 있는 범죄에 대하여서는 5년 2. 5년까지의 로동교화형을 줄 수 있는 범죄에 대하여서는 8년 3. 5년 이상 10년까지의 로동교화형을 줄 수 있는 범죄에 대하여서는 12년 4.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을 줄 수 있는 범죄에 대하여서는 15년 5. 무기로동교화형을 줄 수 있는 범죄에 대하여서는 20년 제 57조 (형사소추 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범죄) 반국가 및 반민족 범죄와 고의적 중살인범죄에 대하여서는 형사소추 시효기간에관계없이 형사책임을 지운다.

제58조 (형사소추 시효기간이 새로 계산되는 사유) 이 법 제56조에 규정된 기간이 넘기전에 범죄자가 새로운 범죄를 저질렀거나 예심 또는 재판을 회피하였거나 수사시작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날부터 형사책임을추궁할 수 있는 기간이 새로 계산된다.

제3장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 제1절 반국가범죄 제59조 (국가전복음모죄) 반국가적 목적으로 정

번, 폭동, 시위, 습격에 참가하였거나 음모에 가담한 자는 5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제60조 (테로죄) 반국가 목적으로 간부들과 인민들을 살인, 납치하였거나 그들에게 상해를 입힌테로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제61조 (반국가선전, 선동죄) 반국가 목적으로 선전, 선동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62조 (조국반역죄) 공민이 조국을 배반하고 다른 나라로 도망쳤거나 투항, 변절하였거나 비밀을 넘겨준 조국반역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제63조 (간첩죄) 공화국 공민이 아닌 자가 우리나라에 대한 정탐을 목적으로 비밀을 탐지, 수집, 제공한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64조 (파괴암해죄) 반국가 목적으로 파괴, 암해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를 여러번 또는 공모하여 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65조 (무장간섭 및 대외관계단절 사촉죄) 다른 나라 사람이 다른 나라 또는 다른 나라에 있는 집단을 추겼거나 자금을 대주어 공화국에 대한 무장간섭을 하게 하였거나 외교관계를 끊어버리게 하였거나 공화국과 체결한 조약을 파괴하게 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66조 (외국인에 대한 적대행위죄) 공화국과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악화시킬 목적으로 공화국에 체류하는 다른 나라 사람의 인신, 재산을 침해한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절 반민족죄 제67조 (민족반역죄) 조선민족으로서 제국주의의 지배 밑에서 우리 인민의 민족해방운동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탄압하였거나 제국주의자들에게 조선민족의 이익을 팔아먹은 민족반역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제68 (조선민족해방운동 탄압죄) 다른 나라 사람이 조선인민의 민족해방운동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탄압한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69조 (조선민족 적대죄) 다른 나라 사람이 조선민족을 적대시할 목적으로 해외에 상주하거나 체류하는 조선사람의 인신, 재산을 침해하였거나 민족적 불화를 일으킨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3절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에 대한 은닉죄, 불신고죄, 방임죄 제70조 (반국가 및 반민족 범죄에 대한 은닉죄) 반국가 및 반민족 범죄를 저지른 자 또는 범죄의 흔적을 감추어 준 자는 4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71조 (반국가범죄에 대한 불신고죄) 반국가 범죄를 준비하고 있거나 저지른 것을 알면서 그것을 해당 기관에 알리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72조 (반국가범죄에 대한 방임죄) 반국가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것을 긴급히 막는 데 필요한 대책을 능히 세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버려둔 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4장 국방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 제73조 (결정, 명령, 지시 집행태만죄) 국방위원회 결정, 명령, 지시를 제때에 정확히 집행하지 않았거나 형식적으로 집행한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를 여러번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상 8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74조 (전시생산준비를 하지 않은 죄)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일군이 전략예비물자의 조성, 전시생산준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75조 (전투기술기재, 군사시설 고의적 파손죄) 전투기술기재와 군사시설을 고의적으로 파손시킨 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많은 전투기술기재 또는 중요한 군사시설을 파손시킨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 또는 무기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76조 (전투기술기재, 군사시설 과실적 파손죄) 전투기술기재, 군사시설을 과실로 파손시킨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많은 전투기술기재 또는 중요한 군사시설을 파손시킨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77조 (군사경비근무질서 위반죄) 민간군사후련에 동원된 자가 경비근무질서를 어겨 경비대상물에 피해를 준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이상 7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78조 (무기 탄약 비법휴대 양도죄) 무기, 탄약을 비법적으로 가지고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 자는 3년 이하의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79조 (군수품 잃어버린 죄) 군수품을 잃어버린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많은 군수품을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80조 (군수품생산에 지장을 준 죄) 군수품생산에 필요한 설비와 원료, 자재를 제때에 생산보장하지 않았거나 그 질을 보장하지 못하여 군수품생산에 지장을 준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81조 (군수품생산에서 오작품, 불합격품 생산죄) 군수품생산부문 일군이 기술규정, 표준조작법, 제품규격, 제품검사에 관한 질서를 어기고 오작품, 불합격품을 생산한 경우에는 4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82조 (군수품생산용자재 군수품 류용죄) 군수품생산부문 책임일군이 군수품생산용 자재와 군수품을 다른 목적에 쓴 경우에는 4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83조 (군사복무동원 기피죄) 군사복무동원을 기피한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를 전시 또는 준전시엔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84조 (기피자, 탈영자 은닉죄) 군사복무동원기피자, 탈영자라는 것을 알면서 숨겨준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85조 (군사임무수행 방해죄) 경비근무, 차단근무, 단속근무, 기동임무 같은 군사임무 수행을 방해한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86조 (군인으로 가장한 죄) 군인으로 가장하여 인민군대의 위신을 훼손시켰거나 사회적으로 위험한 행위를한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87조 (군수품을 팔고 산 죄) 군수품이라는 것을 알면서 팔았거나 산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88조 (국방비밀루설죄) 국방비밀을 루설하였거나 국방비밀문서를 잃어버린 자는 5년 이하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중요한 국방비밀을 루설하였거나 국방비밀루설로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5장 사회주의 경제를 침해한 범죄 제1절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소유를 침해한 범죄 제89조 (국가재산훔친죄)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훔친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공모하여 또는 대량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재산을 훔친 경우에는 2년 이상 9년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특히 대량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재산을 훔친 경우에는 9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90조 (국가재산 빼앗은 죄)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빼앗은 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여러번 또는 공모하여 혹은 대량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재산을 빼앗은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특히 대량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재산을 빼앗은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91조 (국가재산공갈죄)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공갈하여 빼앗은 자는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여러번 또는 공모하여 혹은 대량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재산을 공갈하여 빼앗은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특히 대량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재산을 공갈하여 빼앗은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92조 (국가재산 속여 가진 죄)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속여 가진 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대량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재산을 속여 가진 경우에는 2년 이상 8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특히 대량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재산을 속여 가진 경우에는 8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93조 (국가재산횡령죄) 기관, 기업소, 단체의 위임에 따라 일정한 의무를 실행하는 자 또는 관리일군이 직무상 또는 의무실행상 보관 관리하고 있는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횡령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공모하여 또는 대량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재산을 횡령한 경우에는 3년 이상 9년 이하의 노동

교화형에 처한다.

특히 대량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재산을 횡령한 경우에는 9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94조 (특히 무거운 형태의 국가재산략취죄)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재산략취 행위의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95조 (국가재산강도죄) 사람의 생명, 건강에 위협을 주는 폭행, 협박을 하여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강도한 자는 3년 이상 8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여러번 또는 공모하여 혹은 대량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재산을 강도하였거나 무기, 흉기를 리용하여 강도한 경우에는 8년 이상 1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특히 대량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재산을 강도하였거나 강도행위로 사람을 죽게하였거나 중상을 입힌 경우에는 12년 이상의 노동교화형 또는 무기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96조 (국가재산공동탐오죄) 비법적으로 상금, 우대제, 생활비를 적용하였거나 각종 총화, 후방사업의 명목으로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재산의 공동탐오를 지시하였거나 조직한 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97조 (국가재산 고의적 파손죄)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고의적으로 파손시킨 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특히 중요한 생산수단 또는 시설물을 파손시켰거나 방화, 폭파의 방법으로 파손시킨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 또는 무기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98조 (국가재산 과실적 파손죄)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과실로 파손시킨 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절 경제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 제99조 (화폐위조죄) 공화국 화폐와 공화국 은행에서 바꿀 수 있는 외국화폐를 위조한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 또는 무기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00조 (위조화폐사용죄) 위조된 화폐라는 것을 알면서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01조 (증권위조죄) 국가의 유가증권을 위조한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를 여러번 또는 공모하여 하였을 경우에는 3년 이상 8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02조 (위조증권사용죄) 국가의 유가증권이 위조된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03조 (무현금결제수단의 비법발급, 결제, 사용죄) 무현금결제수단을 비법적으로 발급하였거나 결제하여 주었거나 사용한 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로 특히 대량의 손실을 준 경우에는 3년 이상 8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04조 (외국화폐매매죄) 리기적 목적 밑에 공화국 은행에서 바꿀 수 있는 외국화폐를 비법적으로 바꾼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05조 (공화국화폐를 다른 나라로 내간 죄) 비법적으로 공화국 화폐를 다른 나라로 내간 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 이상 7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06조 (외화관리질서위반죄) 외화관리질서를 어긴 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 이상 7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07조 (비법적으로 설비와 물자를 외화로 팔고 산 죄) 비법적으로 설비와 물자를 외화로 팔았거나 산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08조 (탈세죄)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이 고의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09조 (국가납부금을 바치지 않은 죄) 국가납부금을 바치지 않았거나 적게 바친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10조 (개인의 상적행위죄) 비법적으로 개인이 상적행위를 하여 대량이 리득을 얻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로 특히 대량의 리득을 얻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11조 (기관, 기업소, 단체의 상적행위죄)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일꾼이 비법적으로 상적행위를 조직한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12조 (법인으로 가장하여 경제거래를 한 죄) 법인으로 가장하여 경제거래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13조 (상표권침해죄) 비법적으로 상표를 만들었거나 매매하였거나 상표없는 상품을 판매, 수출입하였거나 기관, 기업소, 단체의 상표권을 침해한 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14조 (거간죄) 거간행위를 하여 대량의 리득을 얻은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로 특히 대량의 리득을 얻은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15조 (귀금속, 유색금속 밀매죄) 귀금속 또는 유색금속을 비법적으로 팔고 산 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대량의 귀금속 또는 유색금속을 비법적으로 팔고 산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또는 무기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16조 (밀수죄) 밀수행위를 한 자는 4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대량 또는 상습적으로 혹은 국가가 통제하는 물건을 밀수하였거나 앞항의 행위를 관리일꾼이 한 경우에는 4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17조 (수출입질서위반죄)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일꾼이 수출입질서를 어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18조 (고리대죄) 고리대를 하여 대량의 리득을 얻은 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로 특히 대량의 리득을 얻은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19조 (로력착취죄) 비법적으로 돈 또는 물건을 주고 개인의 일을 시킨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20조 (비법적으로 작업 또는 수송을 하여 주고 돈이나 물건을 받은 죄) 기관, 기업소, 단체의 기계설비와 운수수단을 리용하여 비법적으로 작업 또는 수송을 하여 주고 대량의 돈 또는 물건을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로 특히 대량의 리득을 얻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21조 (철도, 수상, 항공운수질서 위반죄) 철도, 수상, 항공운수부문 일군이 운수조직과 지휘를 무책임하게 하였거나 교통운수질서를 어긋기차, 배, 비행기를 전복, 파손시켰거나 그 정상적 운행에 지장을주었거나 인명피해를 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로 많은 인명피해를 준 경우에는 3년 이상 8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8년 이상의 로동교화형 또는 무기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22조 (운수수단 리용질서 위반죄) 운수수단의 리용질서를 어겨 교통운수에 지장을 준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로 많은 운수수단을 파손시켰거나 화차, 짐배를 상당한 기간지체시킨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23조 (운수수단의 운행을 지체시킨 죄) 철길, 도로, 배길에 비법적으로 장애물, 차단물을 설치하였거나 표식물을 없애버렸거나 운수일군에게 폭행, 협박하여 운수수단의 운행을 지체시킨 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로 운수수단의 운행을 상당한 기간지체시킨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24조 (대외경제활동을 무책임하게 한 죄) 무역계약을 비롯한 다른 나라와 경제계약을 잘못 맺었거나 대외경제활동을 무책임하게 하여 특히 대량의 손실을 준 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25조 (비법적으로 외화벌이를 한 죄) 비법적

으로 외화벌이를 조직하였거나 한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26조 (비법적으로 외화원천을 동원한 죄) 비법적으로 돈 또는 물건을 주고 외화원천을 동원한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국가가 통제하는 물건을 외화원천으로 동원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27조 (인민경제계획을 되는대로 세운 죄) 인민경제계획을 되는대로 세워 인민경제의 계획적, 균형적 발전에 지장을 준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28조 (인민경제계획을 고친 죄) 인민경제계획을 비준한 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고친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29조 (인민경제계획을 미달한 죄) 경제조직 사업을 짜고들지 않아 인민경제계획을 상당히 미달한 자는 2년 이하의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30조 (인민경제계획 수행정형을 거짓보고한 죄) 인민경제계획 수행정형을 거짓보고한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를 여러번 하였거나 앞항의 행위로 국가의 정책작성과 집행에 지장을 준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31조 (계약규률위반죄) 계약규률을 어겨 인민경제계획 수행에 지장을 준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32조 (계획에 없는 제품생산, 건설죄) 인민경제계획에 맞물린 로력, 설비, 자재, 자금으로 계획에 없는 제품을 생산하였거나 건설을 하여 인민경제계획 수행에 지장을 준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33조 (국가예비물자의 공급, 보관, 리용질서 위반죄) 국가예비물자의 공급, 보관, 리용질서를 어긴 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34조 (비법적인 경제관리죄)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일군이 비법적으로 경제관리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35조 (국가재산을 비법적으로 꾸어 주었거나 꾀) 화폐를 비롯한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비법적으로 꾸어주었거나 꾀 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로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에 특히 대량의 손실을 준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36조 (원료, 자재, 자금, 설비의 류용, 랑비, 사장죄) 원료, 자재, 자금 또는 설비를 류용, 랑비하였거나 사장시켜 경제관리운영에 지장을 주었거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에 대량의 손실을 준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37조 (재산의 부패, 변질, 류실죄)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무책임하게 보관관리하여 대량의 재산을 부패변질, 류실시킨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로 특히 대량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재산을 부패변질, 류실시킨 경우에는 4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38조 (설비, 물자, 자재의 비법처분, 취득죄) 기관, 기업소, 단체 사이에 비법적으로 설비, 물자, 자재를 주었거나 바꾸었거나 산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39조 (국가재산을 랑취하여 기관에 넘겨준 죄)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랑취하여 자기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썼거나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에 넘겨준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40조 (인수품, 수매품 처분죄) 리기적 목적으로 인수하였거나 공급받았거나 수매받은 원료, 자재, 상품을 판매, 처분한 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41조 (오작품, 불합격품 생산죄) 기술규정, 표준조작법, 규격에 관한 질서를 어겨 대량의 오작품, 불합격품을 생산하였거나 생산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로 특히 대량의 손실을 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42조 (품질감독질서위반죄) 품질감독질서를 어기고 제품의 질등급을 그릇되게 평가하였거나

오작품, 불합격품이라는 것을 알면서 묵인하여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43조 (설비점검, 보수를 하지 않은 죄) 설비점검, 보수질서대로 조직사업을 하지 않아 설비를 파손시켰거나 생산을 멈추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로 특히 중요한 설비를 파손시켰거나 상당한 기간 생산을 멈추게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44조 (오작설계, 오작시공죄) 오작설계로 시공하게 하였거나 설계문건이 없이 또는 설계를 어기고 시공하여 인명피해를 일으켰거나 특히 대량의 손실을 준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45조 (준공검사 및 리용허가를 무책임하게 한 죄) 건설물의 준공검사와 기계설비의 리용허가를 무책임하게 하여 사고를 일으킨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로 여러명의 인명피해 그 밖의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상 8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46조 (준공검사 및 리용허가를 받지 않고 리용한 죄) 건설물의 준공검사와 기계설비의 리용허가를 받지 않고 리용하여 사고를 일으킨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로 여러 명의 인명피해 그 밖의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상 8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47조 (국가건물구조변경죄) 비법적으로 국가의 건물구조를 변경시킨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48조 (국가건물을 보수하지 않은 죄) 국가의 건물을 재때에 보수하지 않아 못쓰게 만들었거나 수명을 줄인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49조 (국가소유의 살림집을 비법적으로 넘겨 주고 받은 죄) 돈 또는 물건을 주거나 받고 국가소유의 살림집을 넘겨 주었거나 받았거나 빌려 준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50조 (주체농법대로 지도하지 않은 죄) 농업지도기관 일군이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지도하지 않아 농업생산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51조 (종자의 생산, 공급, 리용질서 위반죄) 종자의 생산, 공급, 리용질서를 어겨 농업생산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52조 (농업생산과학기술공정위반죄) 농업생산의 과학기술공정을 어겼거나 농산작업을 무책임하게 하여 농업생산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53조 (수의방역 및 사양관리질서 위반죄) 수의방역 또는 사양관리질서를 어겨 많은 짐짐승을 죽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로 짐짐승을 무리로 죽게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54조 (양어사업 질서위반죄) 양어수역의 관리, 물고기 자원의 조성과 보호, 물고기의 생산 및 공급질서를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55조 (천해양식 질서위반죄) 천해양식질서를 어기고 양식장관리를 되는데로 하여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56조 (상품공급질서위반죄) 상품을 제때에 인수하지 않았거나 상품공급질서를 어겨 인민생활에 커다란 불편을 준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57조 (상품판매질서 위반죄) 상품을 안면, 무

더기 또는 그 성질을 고쳐 팔았거나 혹은 값을 속여 팔았거나 상점매대를 리용하여 개인의 물품을 팔아 준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58조 (량정질서위반죄) 량곡수매, 수송, 가공, 수급, 공급질서를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59조 (기관, 기업소, 단체의 밀주죄)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일군이 장사 또는 물물교환의 목적 밑에 비법적으로 술, 맥주를 생산하게 하였거나 승인받지 않은 원료로 술, 맥주를 생산하게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60조 (개인의 밀주죄) 개인이 장사를 목적으로 술, 맥주를 만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로 특히 대량의 량곡을 소비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61조 (생산제품의 비법처분죄)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일군이 비법적으로 개인에게 생산제품을 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62조 (계량기구 량목위반죄) 계량기구의 눈금과 량을 비법적으로 고친 자 또는 계량기구의 눈금과 량이 틀린 다는 것을 알면서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63조 (전력생산, 공급질서위반죄) 전력부문 일군이 전력생산, 공급질서를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64조 (실리가 없는 시설건설 기계설비제작죄) 경제적으로 실리가 없거나 매우 적다는 것을 알면서 시설을 건설하였거나 기계설비를 제작하여 대량의 자재와 자금, 로력을 낭비한 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 이상 7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65조 (전력사용질서위반죄) 전력사용질서를
어겨 대량의 전력을 낭비한 자는 2년 이하의 로
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
에 처한다.

제166조 (채신사업을 무책임하게 한 죄) 채신부
문 일꾼이 전기통신, 우편통신보장을 무책임하게
하였거나 방송시설의 점 검보수를 정상적으로
하지 않아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 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로 통신, 방송을 상당한 기간 중지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 형에 처한다.

제167조 (전화설치 및 사용을 방해한 죄) 리기
적 목적으로 여러 차례 승인되지 않은 전화를
설치하여 주었거나 승인된 전 화설치를 제때에
하여 주지 않았거나 정상적인 통화를 할 수 없
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68조 (해사감독질서위반죄) 해사감독질서를
어기고 배 설계의 심의, 배의 등록과 검사, 선원
의 등록과 기술 자격심사를 무책임하게 하여 엄
중한 결과를 일으킨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
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
에 처한다.

제169조 (해난구조의무 기피죄) 해난구조를 의
뢰받은 자가 위협에 처한 사람, 배, 짐을 구조하
지 않아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2년 이
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
에 처한다.

제170조 (가격사업질서위반죄) 가격사업질서를
어기고 가격을 제정, 적용하였거나 국가가 정한
가격을 승인없이 고친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
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
에 처한다.

제171조 (난방열 도용죄) 해당 기관의 승인없이
관망에서 많은 난방열을 뽑아냈거나 관망에 설
치된 변(註: 배관이나 기계설비 안으로 흐르는
고체, 액체, 기체의 흐름을 조절하는 장치) 을
조작하여 난방열공급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72조 (주민연료공급질서위반죄) 주민연료부
문 공급일꾼이 주민연료확보사업을 무책임하게
하였거나 공급질서를 어겨 인민생활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
에 처한다.

제3절 국토관리 및 환경보호질서를 침해한 범죄
제173조 (토지남용, 폐경죄) 승인없이 많은 면적
의 토지를 남용하였거나 폐경시킨 자는 2년 이
하의 로동단련 형에 처한다.

제174조 (토지유실죄) 토지보호사업을 책임적으
로 하지 않아 많은 면적의 토지를 유실시킨 자
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75조 (지하자원개발 및 채굴질서위반죄) 기
관, 기업소, 단체의 일꾼이 지하자원의 개발 및
채굴질서를 어겨 엄중한 결과 를 일으킨 경우에
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76조 (금채취, 제련죄) 비법적으로 금을 채
취, 제련한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
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4년 이하의 로동교화형
에 처한다.

제177조 (산림조성, 보호 이용질서위반죄)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일꾼이 산림조성, 보호, 이
용질서를 어겨 산림자원에 대량의 손실을 준 경
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년 이하의 로동교화
형에 처한다.

178조 (산림남도벌죄) 산림을 남도벌한 자는 2
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
에 처한다.

제179조 (과실산불죄) 과실로 산불을 일으켜 산
림자원에 대량의 손실을 준 자는 2년 이하의 로
동교화 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80조 (산을 개간한 죄) 비법적으로 산을 개
간하여 산림보호에 지장을 준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81조 (수산 및 동식물자원 보호관리질서위반
죄) 허가없이 또는 금지된 시기와 장소 혹은 금
지된 수단과 방법으로 물고기와 이 로운 동식물

을 잡았거나 채취한 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82조 (환경보호질서위반죄) 대기, 물, 토양을 오염시켜 공해를 일으킨 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83조 (하천관리질서위반죄) 하천관리 질서를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84조 (도로관리질서위반죄) 도로를 정상적으로 수리, 정비, 보수하지 않아 운수수단의 운행에 지장을 준 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4절 노동행정질서를 침해한 범죄 제185조 (노동보호 및 노동안전시설을 갖추지 않은 죄)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일군이 노동보호 및 노동안전시설을 갖추지 않아 인명피해 그밖의 엄중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로 여러 사람을 죽게 한 경우에는 4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4년 이상 8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86조 (노동안전질서위반죄) 노동안전질서를 어겨 인명피해 그밖의 엄중한 사고를 일으킨 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로 여러 사람을 죽게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상 8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87조 (교통사고죄) 자동차, 전차, 트랙트르, 오토바이 같은 륜전기계를 운전하는 자가 도로귀책? 전질서를 어겨 인명피해 그밖의 엄중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로 여러 사람이 죽었거나 앞항의 행위를 두고 도주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88조 (로력배치, 조절 동원을 무책임하게 한 죄) 노동행정부문 일군이 로력과견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입직을 거부하였거나 배치하지 않았거나 로력의 동원, 조절사업을 되는대로 하여 로력을 낭비하였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89조 (자의적인 해직죄) 정당한 이유없이 종업원을 내보냈거나 조동시킨 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90조 (분배질서위반죄) 노동의 량과 질에 대한 평가를 고의적으로 그릇되게 하여 생활비, 상금을 부당하게 적용한 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91조 (미성인에게 로동을 시킨죄) 노동할 나이에 이르지 못한 미성인에게 로동을 시킨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92조 (여성에게 금지된 로동을 시킨죄) 여성에게 법적으로 금지된 로동을 시킨 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제6장 사회주의문화를 침해한 범죄 제193조 (퇴폐적인 문화반입, 류포죄) 퇴폐적이고 색정적이며 추잡한 내용을 반영한 음악, 춤, 그림, 사진, 도서, 록 화물과 유연성자기원판, 씨디-롬 같은 기억매체를 허가없이 다른 나라에서 들여 왔거나 만들었거나 류포한 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4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94조 (퇴폐적인 행위를 한 죄) 퇴폐적이고 색정적이며 추잡한 내용을 반영한 음악, 춤, 그림, 사진, 도서, 록 화물과 씨디-롬 같은 기억매체를 여러 번 보았거나 들었거나 그러한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95조 (적대방송청취, 인쇄물, 유인물, 수집, 보관, 류포죄) 반국가목적이 없이 공화국을 반대하는 방송을 체계적으로 들었거나 빠라, 사진,

목화물, 인쇄물, 유인물을 수집, 보관하였거나 류포한 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96조 (역사유적과 유물 명승지, 천연기념물 파손죄) 국가가 보존관리하는 역사유적과 유물 명승지, 천연기념물을 파손시킨 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97조 (역사유적도굴죄) 역사유적을 도굴한 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를 여러번 한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98조 (역사유물 밀수, 밀매죄) 역사유물을 밀수, 밀매한 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를 여러번 하였거나 준국보 역사유물을 밀수, 밀매한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국보역사유물을 밀수, 밀매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99조 (저작, 발명, 창의고안 목살죄) 탐욕, 질투, 그밖의 비열한 동기 밑에 저작, 발명, 창의고안을 그릇되게 평가 하여 목살시킨 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00조 (저작, 발명, 창의고안 도용죄) 이기적 목적에서 다른 사람의 저작, 발명, 창의고안을 자기 이름으로 발표한 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01조 (컴퓨터망침입죄) 국가관리, 국방건설, 첨단과학기술 분야의 컴퓨터망에 침입한 자는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02조 (정보파손죄) 컴퓨터같은 정보처리장치 또는 국가의 중요 정보기억매체를 파손시킨 자

는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03조 (허위정보입력 유포죄) 탐욕, 질투 그밖의 비열한 동기에서 컴퓨터망에 허위정보를 입력시켰거나 유포 시켜 정보처리에 장애를 조성한 자는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04조 (교육강령, 과정안을 무책임하게 집행한 죄) 교육부문 일군이 정당한 이유없이 교육강령과 과정안을 집행하지 않았거나 무책임하게 집행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제205조 (후비양성사업을 부당하게 한 죄) 뇌물을 받았거나 직권을 남용하였거나 협잡의 방법으로 학교추천과 입학, 학생 실력평가와 배치사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06조 (체육선수선발을 부당하게 한 죄) 뇌물을 받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중요 체육경기에 출전할 선수선발을 바로 하지 못하여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07조 (어린이보호관리질서위반죄) 유치원, 탁아소 일군이 어린이 보호관리 질서를 어겨 인명피해를 일으킨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08조 (치료거부죄) 의료일꾼이 특별한 이유없이 왕진과 치료를 거부하여 환자를 죽게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09조 (의료사고죄) 의료일꾼이 치료와 간호를 불성실하게 하였거나 잘못하였거나 약을 잘못주어 환자의 건강에 해를 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로 환자를 죽게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10조 (불량의약품, 의료기구 생산죄) 의약품 제조 또는 의료기구 제작을 잘못하였거나 의약품, 의료기구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환자치료에 지장을 준 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로 환자를 죽게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11조 (비법의료죄) 의료일꾼이 아닌 자 또는 의료일꾼이라 하더라도 병원 밖에서 이기적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여 환자의 건강에 해를 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로 환자를 죽게 한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12조 (위생방역사업 태만죄) 위생방역 일꾼이 방역사업을 무책임하게 하여 전염병을 전파시킨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13조 (국경검역을 무책임하게 한 죄) 국경검역 일꾼이 위생 및 동식물검역을 무책임하게 하여 전염병을 전파시킨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4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14조 (사람의 장기, 태아, 혈액의 취득, 매매, 이용죄) 병치료 또는 이기적 목적으로 사람의 장기, 태아, 태, 혈액을 취득, 매매하였거나 이용한 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로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 또는 무기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15조 (가짜의약품, 식료품제조, 판매죄) 이기적 목적으로 가짜의약품, 식료품을 만들었거나 판 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사람의 생명, 건강에 해로운 가짜의약품, 식료품이라는 것을 알면서 만들었거나 판 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로 사람을 죽게 하였거나 중병에 걸리게 하였거나 장애자로 되게 한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16조 (비법아편제배, 마약제조죄) 비법적으로 아편을 제배하였거나 마약을 제조한 자는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17조 (비법마약사용죄) 비법적으로 마약을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18조 (마약밀수, 밀매죄) 마약을 밀수, 밀매한 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를 여러번 또는 공모하여 하였거나 대량의 마약을 밀수, 밀매한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 또는 무기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7장 일반행정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 제1절 일반행정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 제219조 (집단죄소요죄) 반국가 목적이 없이 집단적으로 국가기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고 반항한 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를 무기 또는 흉기를 이용하여 하였거나 앞항의 행위로 살인, 파괴 같은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항의 행위를 한 주모자와 주동분자는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20조 (직무집행방해죄) 폭행, 협박, 모욕의 방법으로 관리 일꾼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를 공모하여 하였거나 앞항의 행위로 해당부문의 사업에 혼란을 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21조 (법일꾼의 직무집행방해죄) 폭행, 협박, 모욕 또는 직권남용을 하여 법일꾼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를 공모하여 하였거나 앞항의 행위로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4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22조 (허위날조, 유포죄) 반국가 목적이 없이 국가에 대한 불신을 일으킬 수 있는 거짓을 꾸며냈거나 퍼뜨리는 행위를 하여 사회에 혼란을 준 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제223조 (공인, 직인의 비법사용, 위조죄) 공인, 직인을 비법적으로 사용하였거나 위조하였거나 위조한 것인 줄 알면서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24조 (문서, 증명서의 비법처분, 위조사용죄) 이기적 목적 또는 비열한 동기에서 문서, 공민증, 증명서를 감추었거나 처분하였거나 위조하였거나 위조한 것인 줄 알면서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25조 (증명서매매죄) 증명서를 팔았거나 산 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제226조 (출판질서위반죄) 출판질서를 어기고 출판물을 인쇄, 발행, 보급하였거나 타자, 복사하여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27조 (방사성, 폭발성, 인화성물질 수송질서위반죄) 방사성, 폭발성, 인화성물질 수송질서를 어기고 그것을 운반하였거나 부쳤거나 부쳐준 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로 인명피해 또는 대량의 손실을 준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항의 행위로 여러 명의 인명피해 또는 특히 대량의 손실을 준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28조 (경비근무질서위반죄) 경비근무질서를 어겨 경비대상물에 피해를 준 자는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 이상 4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29조 (폭발물 비법휴대, 사용, 양도죄) 폭약, 뇌관, 폭발물을 비법적으로 가지고 있었거나 사용하였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 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4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에 처한다.

제230조 (고의적 비밀누설죄) 국가비밀을 고의적으로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중요한 국가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국가비밀누설로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31조 (과실적비밀누설죄) 국가비밀을 과실로 누설하였거나 국가비밀문서를 잃어버린 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32조 (영공, 영해침입죄) 다른 나라 사람이 비행기 또는 배를 몰고 허가없이 공화국 영공, 영해에 들어왔거나 영공, 영해 밖으로 나갔거나 지정된 항로, 비행고도를 어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33조 (비법국경출입죄) 비법적으로 국경을 넘나든 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34조 (국경출입협조죄) 국경관리부문 일꾼이 비법적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자를 도와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를 여러 번 하였거나 돈 또는 물건을 받고 한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35조 (항해, 어로구역 이탈죄) 허가없이 지정된 항해구역 또는 어로구역을 이탈한 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제236조 (거짓 신고, 진술죄) 범죄에 대하여 거짓 신고를 하였거나 거짓 진술, 감정, 통역, 해석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37조 (증인협박죄) 폭행, 협박의 방법으로 거짓 진술, 감정, 통역, 해석을 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제238조 (복수죄) 복수할 목적으로 직무상 의무를 수행한 자 또는 신고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해석인을 구타, 폭행, 모욕한 자는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39조 (일반범죄 은닉죄) 유기노동교화형 이상의 형벌을 처할 수 있는 범죄자 또는 범죄의 흔적을 감추어 준 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를 여러 번 하였거나 살인, 강도행위를 저지른 범죄자 또는 범죄의 흔적을 감추어 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40조 (일반범죄 불신고죄) 이 법 제95조, 제278조, 제302조의 범죄를 준비하고 있거나 저지른 것을 알면서 해당 기관에 알리지 않은 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제241조 (구속인, 교화인 도주죄) 구속 중에 있거나 형벌집행 중에 있는 자가 도주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시설을 파괴하였거나 경비원에게 폭행을 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42조 (뇌물죄) 관리일꾼이 아닌 자가 뇌물을 주었거나 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제243조 (봉인손상죄) 기관, 기업소, 단체의 기밀실, 문서고, 자료보관실, 귀중품보관실에 한 봉인이 나 법기관에서 한 봉인을 손상시켜 해당 부문의 사업에 지장을 준 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제244조 (부당한 신소죄) 이기적 목적 또는 비열한 동기에서 과장 날조된 신소를 하여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제245조 (대외적 권위를 훼손시킨 죄) 공민이 다른 나라에서 공화국의 대외적 권위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상 8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절 관리일꾼의 직무상 범죄 제246조 (직권남용죄) 관리일꾼이 이기적 목적으로 직권을 남용하여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47조 (월권행위죄) 관리일꾼이 상급의 권한에 속하는 행위를 그의 승인없이 하여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48조 (직무태만죄) 관리일꾼이 상급으로부터 받은 명령, 지시 또는 직무상 의무를 수행하지 않았거나 되는대로 하여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49조 (물질적 부담을 시킨죄)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일꾼이 지원, 후원, 부조, 사업보장의 명목으로 종업 원에게 물질적 부담을 시킨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를 여러 번 하였거나 강요하여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50조 (신소청원묵살죄) 관리일꾼이 공민의 신소청원을 고의적으로 묵살하였거나 그릇되게 처리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51조 (국가기관 권위훼손죄) 관리일꾼이 세도를 썼거나 위법행위를 하여 국가기관의 권위를 훼손시킨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52조 (비법체포, 구속, 수색죄) 법일꾼이 비법적으로 사람을 체포, 구속, 구인하였거나 몸 또는 살림집을 수색 하였거나 재산을 압수, 몰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를 여러 번 하였거나 앞항의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53조 (사건과장, 날조죄) 법일꾼이 비법적으로 사람을 심문하였거나 사건을 과장, 날조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로 사람의 건강에 해를 주었거나 형사책임을 지운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54조 (비법석방죄) 법일꾼이 비법적으로 범죄자를 놓아주었거나 범죄를 가볍게 하여 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55조 (부당 판결, 판정죄) 재판일꾼이 고의적으로 부당한 판결, 판정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상 8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56조 (판결, 판정을 집행하지 않은 죄) 정당한 이유없이 확정된 판결, 판정을 집행하지 않은 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제257조 (관리일꾼 뇌물죄) 관리일꾼이 뇌물을 주었거나 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뇌물을 특히 대량 또는 강요하여 받았거나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가 받은 경우에는 4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8장 사회주의 공동생활질서를 침해한 범죄 제258조 (불량자행위죄) 파렴치한 불량자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공모하여 또는 잔인한 방법으로 불량자 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59조 (패싸움죄) 집단적으로 패싸움을 하여 사회질서를 문란시킨 자는 2년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를 무기 또는 흉기를 리용하였거나 앞항의 행위로 살인, 파괴의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항의 행위를 한 주모자와 주동분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60조 (미성인 범죄 추진죄) 17살에 이르지 못한 자에게 범죄를 저지르도록 주켰거나 범죄에 가담하게 하였거나 불량자로 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61조 (매음죄) 매음행위를 여러번 한 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상습적으로 매음행위를 하였거나 앞항의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62조 (음탕한 행위죄) 여러 남녀가 모여 음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를 여러번 하였거나 앞항의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63조 (직권참용죄) 관리일꾼이 아닌 자가 관리일꾼으로 가장하여 또는 관리일꾼이 다른 관리일꾼의직권을 참용하여 국가의 위신을 훼손시켰거나 사회적으로 위험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64조 (거짓행세죄) 검열원, 단속원, 감독원으로 가장하여 사회적으로 위험한 행위를 한 자는 2년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제265조(칭호참용죄) 리기적 목적으로 국가적 명예나 칭호를 참용하여 사회적으로 위험한 행위를 여러번 한 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제266조 (도박죄) 돈 또는 물건을 대고 도박을 한 자는 2년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67조 (미신행위죄) 돈 또는 물건을 받고 미신행위를 여러번 한 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68조 (미신행위 조장죄) 리기적 목적 그밖의 동기에서 여러 사람에게 미신행위를 류포한 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를 많은 사람에게 하였거나 대량의 돈 또는 물건을 받고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상 7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69조 (실력행사죄) 인신상 또는 재산상 권리를 법에 의거하지 않고 실력을 행사하여 차지한 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제270조 (비법혼인죄) 탐욕 그밖의 비렬한 동기에서 여러 대상과 혼인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가정을 파탄시킨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71조 (늙은이, 어린이보호책임회피죄) 늙은이, 어린이 또는 로동능력이 없는 사람을 보호할 의무를 지닌 자가 그를 고의적으로 돌보지 않아 건강에 해를 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72조 (학대괄시죄) 직무상 복종관계에 있거나 자기의 보호 밑에 있는 사람을 학대괄시하여 그의건강에 해를 준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로 사람을 죽게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73조 (습득물횡령죄) 주은 돈 또는 물건을 국가기관에 바치지 않고 가진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274조 (사례금, 리득금을 바치지 않은 죄) 공무원이 거래과정에 받았거나 생긴 대량의 사례금 또는 리득금을 국가기관에바치지 않고 가졌거나 공동탐오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75조 (략취물건거래죄) 략취한 물건인줄 알면서 가졌거나 샀거나 팔아 준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76조 (묘파손죄) 묘를 고의적으로 파손시킨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많은 묘를 파손시킨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 이상 4년 이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77조 (엄중한 결과발생 방임죄) 사람이 죽을

위험에 처하였거나 특히 대량의 손실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해당기관 또는 관계자에게 알리지 않았거나 능히 할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 사람을 죽게 하였거나 그밖의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9장 공민의 생명재산을 침해한 범죄 제1절 생명, 건강, 인격을 침해한 범죄 제278조 (고의적 중살인죄) 탐욕, 질투 그밖의 비렬한 동기에서 사람을 고의적으로 죽인 자는 10년 이상의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

제279조 (고의적 경살인죄) 탐욕, 질투 그밖의 비렬한 동기가 없이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자는 3년 이상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80조 (발작적 격분에 의한 살인죄) 피해자의 폭행 또는 심한 모욕때문에 일어난 발작적 격분상태에서 사람을 죽인자는 3년 이상 6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로 여러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6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81조 (정당방위초과살인죄) 정당방위의 정도를 넘었거나 직무집행상 필요한 정도를 넘는 행위를 하여 사람을 죽인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82조 (과실적 살인죄) 사람을 과실로 죽인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과실로 여러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3년 이상 8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83조 (고의적 중상해죄) 고의적으로 사람의 생명에 위협할 정도의 중상을 입혔거나 눈, 귀 그밖의 기능을 잃게 하였거나 얼굴에 흉한 허물을 남겼거나 정신병을 일으키게 하였거나 로동능력을 현저히 떨어뜨린 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로 피해자가 죽었거나 앞항의 행위를 잔인한 방법으로 하였거나 또는 공모하여 하였거나 여러 사람에게 중상을 입힌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84조 (발작적 격분에 의한 중상해죄) 피해자의 폭행 또는 심한 모욕 때문에 일어난 발작적 격분상태에서 사람에게중상을 입힌 자는 2년 이

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로 여러 사람에게 중상을 입힌 경우에는 2년 이상 4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85조 (정당방위초과 중상해죄) 정당방위의 정도를 넘었거나 직무집행상 필요한 정도를 넘는 행위를 하여 사람에게 중상을 입힌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86조 (과실적 중상해죄) 사람에게 과실로 중상을 입힌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과실로 여러 사람에게 중상을 입힌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87조 (고의적 경상해죄) 사람에게 고의적으로 경상을 입힌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여러 사람에게 경상을 입혔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경상을 입힌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88조 (폭행죄) 사람에게 폭행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를 공모 또는 잔인한 방법으로 하였거나 여러 사람에게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89조 (어린이 훔친죄) 리기적 목적 또는 복수적 동기에서 어린이를 훔쳤거나 감춘 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90조 (유괴죄) 리기적 목적에서 사람을 유괴한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여러 사람을 유괴하였거나 공모하여 사람을 유괴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91조 (비법자유구속죄) 비법적으로 사람의 자유를 구속한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92조 (모역 및 명예훼손죄) 사람을 모욕하였거나 그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293조 (강간죄) 폭행, 협박하였거나 또는 구원을 받지 못할 상태를 리용하여 여성을 강간한 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를 여러 여성에 대하여 하였거나 틈간한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94조 (복종관계에 있는 여성을 강요하여 성교한 죄) 복종관계에 있는 여성을 강요하여 성교한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를 여러 여성에 대하여 하였거나 앞항의 행위로 여성을 타락 또는 자살하게 한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95조 (미성인 성교죄) 15살에 이르지 못한 미성인과 성교한 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를 여러번 또는 강요하여 한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절 개인소유를 침해한 범죄 제296조 (개인재산 훔친 죄) 개인의 재산을 훔친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공모하여 또는 대량의 개인재산을 훔친 경우에는 2년 이상 7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특히 대량의 개인재산을 훔친 경우에는 7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97조 (개인재산 빼앗은 죄) 개인의 재산을 빼앗은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여러번 또는 공모하여 혹은 대량의 개인재산을 빼앗은 경우에는 3년 이상 8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특히 대량의 개인재산을 빼앗은 경우에는 8년 이상 1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98조 (개인재산 공갈죄) 개인의 재산을 공갈하여 빼앗은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여러번 또는 공모하여 혹은 대량의 개인재산을 공갈하여 빼앗은 경우에는 3년 이상 8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특히 대량의 개인재산을 공갈하여 빼앗은 경우에는 8년 이상 1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99조 (개인재산 속여 가진 죄) 개인의 재산을 속여 가진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대량의 개인재산을 속여 가진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특히 대량의 개인재산을 속여 가진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300조 (개인재산 횡령죄) 개인의 재산을 횡령한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공모하여 또는 대량의 개인재산을 횡령한 경우에는 2년 이상 7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특히 대량의 개인재산을 횡령한 경우에는 7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301조 (무거운 형태의 개인재산략취죄) 개인재산 략취행위의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302조 (개인재산 강도죄) 사람의 생명, 건강에 위협을 주는 폭행, 협박을 하여 개인의 재산을 강도한 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여러번 또는 공모하여 혹은 무기, 흉기를 리용하였거나 대량의 개인재산을 강도하였거나 강도행위로 사람을 죽였거나 중상을 입힌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 또는 무기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303조 (개인재산 고의적 파괴죄) 개인의 재산을 고의적으로 파괴한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여러번 또는 공모하여 혹은 대량의 개인재산을 파괴한 경우에는 4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4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2004.12.08 (수) 13:12